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4회 제 1차 정례회

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

검토보고서



2024. 6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

검토보고서

2024. 6. 21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
- 제출일자: 2024. 5. 30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4. 5. 30.
- 검토기간: 2024. 6. 3. ~ 6. 7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및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일시적인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.
-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, 지출계획에서는 기존 예치금 25,604,328천원 중 16,642,81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임.
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3년도 말 조성액(a)	2024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(e=d+a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기정	25,604,328	816,778	0	816,778	26,421,106
변경	25,604,328	816,778	16,642,814	△15,826,036	9,778,292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조성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63%인 16,642,814천원 감액된 9,778,292천원임.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 · 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 · 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 ·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,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됨.
- 이번 2024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 변경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,
- 지출 계획은 기존 예치금(2023년도 말 조성액) 256억 432만 8천원 중 166억 4,281만 4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, 전출금이

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% 이내로 관련 규정 및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대구시 구·군별 조성 현황 비교 및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〈대구시 구·군별 조성 현황〉

(2024. 3월말 기준, 단위: 억원)

기금명	달서구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북구	수성구	달성군	군위군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256	1,187	366	1,415	979	232	24	2,129	1,443

※ 수성구: 2024. 3월 3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완료

※ 서구: 2024. 5월 25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완료(현재 1,165억원)

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〉

【관 계 법령】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
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%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3.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-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-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3.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4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
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 6.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- 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- 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6조(이자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이자율 수준,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- 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·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통합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
2. 통합기금출납원: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

-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